개혁개방 이후 중국 길림성의 종교 정책과 한국 종교*

高炳哲**

<목 차>

1. 들어가면서
2. 길림성의 종교정책과 종무행정
3. 길림성의 종교 현황
4. 한국 종교의 길림성 진출 방식
5.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자본주의적 '문화'와 '사상'을 겨냥했던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1期 3中全會)를 기점으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부문의 현대화를 목표로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에는 상호 정부의 존재를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중수교'가 채택되었다.[1]

한중수교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제 교류(53.5%), 군사·안보·외교(33.2%), 문화·체육 교류(5.4%)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2]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A00052).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한반도 평화통일 토대 마련/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담긴 뜻>, ≪한국일보≫, 1992.8.25, 3면.

2) <'기습 한중수교' 유감>, ≪동아일보≫, 1992.8.26, 9면; <'한·중 수교 잘된 일' 85%/

실제로 1993부터 1995년 사이에 한국의 해외관광시장에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 국가가 될 정도로 한국인의 중국 진출은 확대되었다.[3] 또한 한국인 가운데 주재원(駐在員)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이나 자녀교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신선인'(新鮮人)도 등장하였다.[4]

한국 종교계도 개혁·개방 이후 대체로 제3국을 통한 관광 등의 방식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하였다. 진출 속도는 1991년 7월에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중국선교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빠른 편이었다. 개혁·개방이 한국 종교계의 중국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면, 한중수교는 한국 종교계의 중국 진출 방식을 변화시킨 계기였다. 한중수교의 가능성이 제기될 당시부터 기존의 '물밑대화'나 '제3국 우회방식'은 공식적인 '교환 방문' 형태로 변화되었다.

1994년, '조선족 중심선교', '무분별한 물량 위주의 선교', '중국의 종교법을 무시한 선교'였다는 개신교계의 자기비판은 한중수교 이후 고조된 선교 분위기를 시사한다.[5] 중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하여 외국 종교단체의 선·포교 활동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정부의 경계는 한국정부에 대한 개신교계의 중국 선교 자제 요청, 중국 내 외국인의 선교 상황에 대한 주시, 외국인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종교법의 공포 등으로 이어졌다.[6]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 사이에 종교가 문제 상황이 되면서 중국의 종교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대체로 세 부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신학 또는 교학계의 연구 성과이다.[7] 이 연구들은 대

갤럽여론조사>, ≪서울신문≫, 1992-08-26, 02면.

3) 윤창운, <사회주의국가의 개방과 개혁에 미친 인적 교류의 영향과 파급효과>, ≪북한학보≫ 21, 북한학회, 1997, 236-237쪽.

4) <조선족도 한국인도 아닌 '新鮮人'/한·중 수교 후 정착>, ≪한국일보≫, 2003.11.18, 1면.

5) <대만·홍콩 우회진출/지역별 전략 수립/화교·방한 한족 전도>, ≪국민일보≫, 1994.8.24, 22면. 한국 내에 화교 중심의 교회로는 '중화기독교회'가 있다.

6) <대만·홍콩 우회진출/지역별 전략 수립/화교·방한 한족 전도>, ≪국민일보≫, 1994.8.24, 22면.

7) 김영환, <중국의 종교정책과 북방선교>, ≪누리와 말씀≫ 4,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왕쓰웨, <중국의 종교정책과 북방선교의 현실>, ≪누리와 말씀≫ 4,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유서상, <최근 중국의 종교정책>, ≪신학논총≫ 3,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7; 왕쓰웨, <최근 중국 공산당의 종교 사업에 대한 중시와 태도(1988-1993)>, ≪신학논단≫ 22,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94.

www.kci.go.kr

체로 원활한 중국 선교를 지향하는 목적을 지닌다. 두 번째는 기타 학계의 연구 성과이다.[8]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의외로 적지 않지만 대체로 중국의 종교정책에 국한되어 그 구체적인 현실 적용에 대해 미진한 편이다. 세 번째는 종교정책과 종교학가 핵심어인 종교학계의 연구 성과이다.[9] 그렇지만 종교학계의 연구 성과는 개척 단계에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길림성(吉林省)의 경우를 통해 중국 종교정책과 적용 사례, 길림성의 종교 현황, 한국 종교의 길림성 진출 방식 등을 검토하고, 그를 통해 한국 종교의 중국 선교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동북삼성의 길림성에 주목한 이유는 재중 한국인이 조선족처럼 밀집된, 가령 2006년 말 현재 한국인 약 10만 명(장기체류자 약 6.1만 명)의 장기·단기 체류 지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한국인 수감자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중국 전체의 52%).[10] 이 연구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길림성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한국 종교계의 중국 선·포교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에,

8) 차차석,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한국불교학≫ 47, 한국불교학회, 2007; 박만준,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소연구>, ≪중소연구≫ 29-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 조재송, <胡錦濤 체제의 신종교정책 析評 -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34, 중국학연구회, 2005; 강준영, <중국의 종교통제와 사회 안정>, ≪중국연구≫ 34, 2004; 박만준,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에서 본 대(對)기독교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망 - 제7차 중국기독교 전국대표회의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4; 오재환, <개방 20년 기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중국학보≫ 48, 한국중국학회, 2003; 이은자, <비밀결사의 유산과 현대중국 - 법륜공의 역사적 기원>, ≪중국학보≫ 47, 한국중국학회, 2003;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중국종교의 부활>, ≪중국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2002; 허원,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종교인식 변화>, ≪동아시아역사연구≫ 1,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6; 전성흥, <중국의 개혁과 종교 - 국가의 종교정책, 민간의 종교 활동, 지방의 종교통제>, ≪동아연구≫ 3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5; 허원, <사회주의 중국의 현대화와 기독교 인식>, ≪인문과학연구≫ 2,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9) 류성민, <한, 중, 일 삼국의 종교정책 비교>, ≪종교연구≫ 46, 한국종교학회, 2007; 류성민, <중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연구>, ≪종교연구≫ 48, 한국종교학회, 2007.

10) 주선양 총영사관(http://chn-shenyang.mofat.go.kr/kor/as/chn-shenyang/affair/relation/index.jsp);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재외동포, 재중 한국인은 대략 2005-2006년에 244만 명, 2007-2008년에 276만 명, 2009년에 277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본 과제는 2008년 학진 지원을 받은 공동과제로서 흑룡강성과 요녕성의 경우는 다른 연구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중국의 한국 종교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길림성의 종교정책과 종무행정

길림성은 중국 동북 지역으로 한국인과 조선족과 북한 주민이 만나는 접점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성도〔省會〕 장춘시(長春市)와 지급시(地級市) 8개, 자치주(自治州) 1개, 현급 시(縣級市) 20개, 현(縣) 18개, 소수민족 자치현(少數民族自治縣) 3개, 시 직할구(市轄區) 19개, 진(鎭) 451개, 소수민족 진(少數民族鎭) 5개, 향(鄕) 287개, 소수민족 향(少數民族鄕) 28개,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241개 등이다. 지급 시와 자치주, 현급 시와 현과 자치현과 시 직할구, 향과 진은 각각 행정구역상 동급이다.[11] 현급 이상 행정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

<표1> 吉林省 縣級以上 行政區劃表

	市轄區	市	縣	비고
長春市	朝陽區, 寬城區, 南關區, 二道區, 綠園區, 雙陽區	榆樹市, 九台市, 德惠市	農安縣	
吉林市	昌邑區, 龍潭區, 船營區, 豊滿區	樺甸市, 蛟河市, 舒蘭市, 磐石市	永吉縣	
延邊朝鮮族		延吉市, 圖們市,	汪淸縣, 安圖縣	延邊朝鮮族自治

11) 中華民國憲法 第1章 第30條; 第31條; 왕순홍 저, 정차근 역, ≪중국의 어제와 오늘≫(평민사, 2003), 4장 행정구역. 1급(직할시·성·자치구·특별행정구). 2급(地區·盟·自治州·地級市). 3급(縣·旗·縣級市). 제4급(향·민족향·진).

12) 길림성인민정부(http://www.jl.gov.cn) 내 曆史沿革; ≪吉林年鑒2003≫(吉林年鑒編纂委員會) 基本概況. 연감에는 鄕(鎭)이 766개, 街道辦事處가 240개지만 현재 각각 765개와 241개로 기록된다. 시 직할 구는 市와 직할 區, 街道辦事處는 區 아래 단위인 街道(jiēdào)와 사무공간인 辦事處(bànshìchù)의 합성어이다.

www.kci.go.kr

自治州		敦化市, 龍井市, 琿春市, 和龍市		州(1952.9.3)
白山市	八道江區	臨江市	撫松縣, 靖宇縣, 長白朝鮮族自治縣, 江源縣	長白朝鮮族自治縣(1958.9.15)
通化市	東昌區, 二道江區	梅河口市, 集安市	通化縣, 輝南縣, 柳河縣	
遼源市	龍山區, 西安區		東風縣, 東遼縣	
四平市	鐵西區, 鐵東區	公主嶺市, 雙遼市	梨樹縣, 伊通滿族自治縣	伊通滿族自治縣(1988.8.30)
松原市	寧江區	長嶺縣,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區, 乾安縣, 扶餘縣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1956.9.1)
白城市	洮北區	洮南市, 大安市	鎭賚縣, 通榆縣	

길림성 인구를 구성하는 민족은 한족, 조선족, 만족(滿族), 몽고족(蒙古族), 회족(回族), 석백족(錫伯族) 등 49개이다. 2003년 당시 길림성 총인구는 약 2,658만 명(남 50.8%)이었으며, 연령별로 18-34세(30.52%)와 35-59세(37.58%), 지역별로 장춘시(27%)와 길림시(16%)에 밀집되었다.[13] 2007년 당시에는 총인구 2,708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한족이었다.[14] 특히 2007년 현재, 중국의 조선족 인구는 55개 소수민족 중 13위(약 1,449만 명의 1.84%)인 약 223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동북 삼성의 호구부에 등록된 인구는 185만 명 이상이었다. 2007년 조선족 총인구 대비 동북 삼성의 조선족 비중은 83% 수준으로 길림성 66%, 흑룡강성 21%, 요녕성 13% 순이며, 길림성 내에서 연변자치주가 전체 조선족의 38%를 차지한다.[15]

종교와 관련하여 길림성 정부(이하 성 정부)는 <헌법>에 입각한 종교 정책을 시행한다. 종교와 관련된 <헌법>의 주된 내용은 공민의 '종교 신앙 자

13) 길림성인민정부 홈페이지의 ≪길림연감2003≫과 '2003年吉林省人口主要數據(data)統計表'.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총인구 분포는 敦化市(22%), 延吉市(19%), 龍井市(16%) 등에 집중되고 있다.
14) 길림성인민정부(http://www.jl.gov.cn/jlsq/mzms/mzfb/index.htm) 民族與分布/
15) 주 선양 총영사관(http://chn-shenyang.mofat.go.kr/kor/as/chn-shenyang/affair/state2/index.jsp)

유' 보장, '정상적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종교 또는 종교인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종교를 이용한 사회질서의 파괴 및 공민의 신체와 건강 훼손 및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 방해 금지 등이다. 또한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에 대한 외국세력 지배 금지, 중국 영내 외국인의 중국 법률 준수 등도 포함된다.[16] 특히 1994년의 <종교 사무조례> 제정은 종교오성론(宗教五性論: 群衆·長期·複雜·民族·國際性)이 제시된 1982년의 19호 문건[17]에 따른 기존의 임기응변식 종무행정에 마침표를 찍고, 종무행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길림성도 3년 후인 1997년에 <길림성 종교 사무조례>를 제정하여 성급 차원에서 종교와 관련된 법적 질서를 선언하였다. 이후 법적으로 주무부서 및 상급부서에 대해 종교단체나 하급 종무행정 부서의 행정소송도 가능해졌고, 벌금형 등의 처벌도 규격화된 절차로 진행되어야 했다. 아래 표는 성 정부와 중앙인민정부의 종교 정책을 상호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예시한 것이다.[18]

<표2> 중앙인민정부와 길림성인민정부의 종교 관련 법령

중앙인민정부	길림성인민정부
* 1982년 <憲法> 개정 이후. <憲法> 제34조 / 제36조	좌동
<宗教事務條例>(國務院令 第426號. '04.7.7. 國務院第57次常務會議 통과, '05.3.1. 시행) * 제48조 기존 <宗教活動場所管理條例>(國務院令 第145號. '94.1.31) 폐지	좌동 * <吉林省宗教事務條例>('98.5.1.시행)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國務院令第44號. '94.1.31)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	좌동

16) 中華民國憲法 第二章 公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三十二條; 第三十四條; 第三十六條.
17)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1982.3.31)
18) 法律圖書館(http://www.law-lib.com/); 吉林省民族宗教網(http://mw.jl.gov.cn/jlzj/).

www.kci.go.kr

<宗教院校聘用外籍專業人員辦法>(通知. '98.11.19. 由國家宗教事務局, 國家外國專家局、公安部 頒發)	좌동
<宗教活動場所設立審批和登記辦法>(國家宗教事務局令第2號. '05.4.14. 國家宗教事務局 局務會議, '05.4.21.시행)	좌동
<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國務院令第250號. '98.9.25. 國務院第8次常務會議, '98.10.25. 시행) *기존 <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89.10.25. 國務院 發布) 폐지.	좌동
<內部資料性出版物管理辦法>('97.12.30. 新聞出版署 發布, '98.1.1. 시행)	좌동
<音像制品複制管理辦法>('96.2.1. 新聞出版署 頒布)	좌동
<圖書、期刊、音像制品、電子出版物重大選題備案辦法>('97.10.10. 新聞出版署 頒布)	좌동
<音像制品管理條例>(國務院令第341號. '01.12.12. 國務院第50次常務會議, '02.2.1. 시행) *제51조 기존 <音像制品管理條例>('94.8.25. 國務院) 폐지	좌동
<印刷業管理條例>(國務院令 第315號. '01.7.26.國務院 第43次常務會議 통과·시행) *제48조 기존 <印刷業管理條例>('97.3.8. 國務院) 폐지	좌동
<出版管理條例>(國務院令 第343號. '01.12.12.國務院 第50次常務會議, '02.2.1.시행) *제68조 기존 <出版管理條例>('97.1.2. 國務院) 폐지	좌동
<電子出版物管理規定>('97.12.30.新聞出版署發布, '98.1.1.시행)	좌동
<宗教社會團體登記管理實施辦法>('91.5.6. 國務院宗教事務局、民政部 通知)	좌동

성 정부는 <길림성 종교 사무조례>(1997년)를 통해 종교 신앙 자유의 보장, 헌법·법률·정책 범위 내의 종교 활동 인정, 삼자원칙의 고수 등의 주요

종교정책을 구체화하였다.[19] 성 정부에서 '종교 신앙 자유정책'의 골격으로 삼는 것은 일곱 가지이다. 첫째, 종교(교파)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자유이다. 둘째, 헌법·법률·정책범위 내 종교 신앙 자유의 권리(활동) 행사이다. 셋째, 법 앞의 평등과 차별대우〔歧視〕 금지이다. 넷째,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를 이용한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과 사회공공교육, 혼인, 가족계획(計劃生育) 등의 관여 금지이다. 다섯째, '정상적' 종교조직과 종교 활동과 종교 활동 장소의 보호이다. 여섯째, 무신론과 유신론의 상호 존중이다. 즉 종교 활동 장소 내의 무신론 선전, 종교 활동 장소 밖의 유신론 선전과 전단지(傳單) 배포나 주관부서의 비준 없는 종교서적 발행은 금지된다. 일곱째,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에 대한 외국세력의 지배 금지이다. 즉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간섭과 통제 없는 자체 처리(來辦), 종교단체는 독립·자주·자영(自辦) 방침 하에 자양·자치·자전의 실행을 원칙으로 삼는다.[20]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성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종교 신앙의 자유,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외국 종교분야 인사와의 우호적 왕래 및 문화 학술 교류 활동 등을 보호한다. 이는 중앙인민정부가 제시한 1994년 <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 제1·2조와 유사한 내용이다. 그에 따라 가령 한국인은 지정된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에 참관할 수 있고, 성·자치구·직할시 이상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으면 설교·강연 등도 가능하다.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북경을 포함한 한인 집중 거주 지역에는 한인만을 위한 종교 활동 장소도 있다. 한인교회에서 중국인 목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개인적인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의 반입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다

19) <吉林省宗教事務條例>(吉林省第八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公告, 第95號). 이 조례는 1997년 12월 19일 길림성 제8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를 통과하여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길림성인대상위회(吉林省人大常委會)에서 일부 수정되어 2004년 6월 18일에 공포·실시되었다. <길림성 종교 사무조례>는 省級 조례로는 빠르게 제정된 것이다.

20) 吉林省民族宗教網(http://mw.jl.gov.cn/jlzj/zcfg/200512/t20051225_107662.htm)

www.kci.go.kr

만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종교 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 공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21]

외국인의 종교 자유 신앙에 대한 보호는 최소한 헌법・법률・정책 범위 내의 삼자원칙, 즉 중국 교회나 사찰 등의 자립적 관리(自治), 자체 중국 교역자 양성과 종교시설 설립 및 관리(自養), 자체 포교와 전도(自傳)의 의미를 숙지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가령 합법적 승인이 없으면 한인 교역자가 중국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중국 선교 금지 차원에서 한국기업에 고용된 중국인이나 고용되지 않은 중국인이 한인교회를 포함한 외국인 교회의 예배를 참관할 수 없다. 외국인이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관련 인쇄물과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불법이다.[22]

중앙인민정부의 종교 정책이 성 정부에 거의 적용되듯, 성 정부의 종교 정책도 하위 지방 인민정부에 거의 적용된다. 가령 2003년 1월에 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에 따르면, 공민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고 종교로 인한 차별 대우(歧視)를 할 수 없다. 자치기관은 정상적 종교 활동을 보호해야 하며,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하거나 국가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자치주 내의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23] 이 내용은 2009년 현재 <장백조선족자치현 자치조례>와 <이통만족자치현 자치조례>의 관련 내용과 유사하다.[24]

21) 주선양총영사관(http://chn-shenyang.mofat.go.kr/kor/as/chn-shenyang/help/search/index.jsp)의 '중국체류 관련 유의사항(2005.5.27)'.

22) <류 슈싱 종교사무국 부국장 일문일답>, ≪국민일보≫, 1996.9.21, 13면.

23) <延邊朝鮮族自治州自治條例>(1985年 4 月24日 延邊朝鮮族自治州 第八屆 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 通過. 1985年 7 月31日 吉林省 第六屆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十四次會議 批准). 이 조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차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되어 2003년 1월 22일에 발표되어 동월 22일부터 실시되었다.

24) <長白朝鮮族自治縣自治條例>(1991年 3 月23日長白朝鮮族自治縣第十二屆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通過. 1991年5月9日吉林省第七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二次會議批准. 1991年6月15日發布施行) 第七條; <伊通滿族自治縣自治條例>(1992年6月9日伊通滿族自治縣第一屆人民代表大會第四次會議通過. 1992年7月13日吉林省第七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九次會議批准) 第七條. 관련 홈페이지(http://law.baidu.com) 참조.

성 정부의 종무행정 구조는 중앙인민정부와 유사하다. 중앙인민정부의 경우, 종무행정 담당 부서는 국무원(國務院)의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國家宗教事務局, 이하 종교국)이다. 종교국은 종교단체 및 유관 부서와 연계하여 종무행정을 집행한다.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25], 중국도교협회[26], 중국이슬람교협회[27], 중국기독교협회[28], 중국천주교협회[29] 등을 의미한다.[30] 유관부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中國人民政治協商會, 이하 정협), 통일전선공작부(統一戰線工作部, 이하 통전부) 등을 의미한다.[31]

유관부서와 관련하여 정협 내에는 민족・종교위원회가 있고[32], 정협 위원에는 5대종교 협회장들이 포함된다. 통전부도 '민족・종교정책과 법률・법규의 교육・관철・집행, 소수민족 간부와 민족종교계 인사를 연계한 종교단체의 인사 안배, 민간신앙활동 관리, 종교와 민간신앙활동의 사무 관리 등의 종교 사무에 관여한다.[33] 종교 문제에 대해 통전부가 전략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정협이 공식화하고, 종교국이 행정을 집행하는 식이다. 그 외에 종교국은 종교단체의 법인 허가 여부를 담당하는 국가민정부(國家民政部, 이하 민정부),

25) 中國佛教信息網(http://www.buddhism.com.cn/).

26) 中國道教協會網(http://www.taoist.org.cn/zuzhi/).

27) 中國伊斯蘭教協會(http://www.chinaislam.net.cn).

28) 中國基督教網站(http://www.chineseprotestantchurch.org.cn). 중국기독교협회(1980.10)는 국가법령 준수와 신자 교육과 종교 신앙 자유정책의 관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1954.8)와 연계되며, 주로 경전과 ≪천풍(天風)≫ 등을 포함한 종교 관련 출판과 신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9) 中國天主教網站(http://www.ccccn.org/article/other/Legal/fagui/2008-01-25/1580.html). <中國天主教愛國會章程> 第三章(組織機構及負責人生成和罷免) 第八條; <中國天主教主教團章程> 第四條. 중국천주교협회에는 中國天主教愛國會(1957.7, 이하 애국회)와 中國天主教主教團(이하 주교단) 또는 天主教教務委員會가 있다.

3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網(http://big5.gov.cn/gate/big5/www.gov.cn/wsfw/)

31) 정협은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兩會)로 불리며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 중국의 최고 정책자문회의 기구이다. 전국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2일 전에 개최되고, 상무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다.

32)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設全國委員會(http://www.cppcc.gov.cn/zxjj/jianjie_2.html). 2008년 정협 제11차 전국위원회는 9개의 하위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설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민족・종교위원회가 있다.

33) 統一戰線工作部(http://www.jinjiang.gov.cn:8061/gate/big5/www.jinjiang.gov.cn/main/zgjj/swjgzn/)

www.kci.go.kr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이하 민위)와도 연계한다.[34]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의 주요 문건, 즉 1980년 종교사무국과 국가건설위원회 등에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독립자주 방침을 강조한 국무원 문건[35], 1982년 종교오성론을 제시한 19호 문건, 1991년 종교 신앙 자유정책의 온정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강택민 문건[36]은 종교에 대한 인식과 상호 연계 처리를 시사한다. 종교오성론은 사회주의 시기에도 종교가 장기간 존재하고 다수 군중이 참여하는, 또한 민족문제와 계급투쟁과 국제적인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는 극단적 종교소멸론 보다 사회주의 근대화와 혁명 구현을 위해 해석의 차이를 유지하되 공동 기반에 대한 참여를 강조한 연합전선 정책의 관점이다.[37] 그리고 상호 연계 처리의 목적은 1993년 강택민의 '삼구화(三句話)', 즉 ①당의 종교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관철, ②법에 의한 종교 사무관리 강화, ③종교와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상호 적응 인도 등에 있다.[38]

성 정부의 종무행정도 중앙인민정부처럼 종교단체와 유관기관의 연계 속에서 진행된다. 성 정부는 2000년에 민족사무위원회・종교사무국(이하 성 민위)를 설치하고, 그 안에 종교사무1처(宗教事務一處, 불교・도교・이슬람교 담당)・2처(二處, 천주교・기독교 담당)를 두었다.[39] 중앙인민정부에는 종교국과 민위가 별개 부서지만 성급정부 이하에서는 병합된다. 2004년 이후에는 종교사무부서가 종교종합처・종교사무1처(불교・이슬람교)・2처(기독교)・3처(천주교・도교)로 확대・조정되었다.[40] 기존과 달리 '개신교 전담 부서'가

34) 國家民族事務委員會(http://politics.people.com.cn/BIG5/8198/58705/59794/4187337.html)
35) 國務院批轉宗教事務局・國家建委等單位, ≪關於落實宗教團體房産政策等問題的報告≫(1980.7.16).
36) 江澤民, <保持黨的宗教政策的穩定性和連續性>(1991.1.30).
37) Philip Wickeri, *The Chu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편역, ≪중국교회의 현실과 신학≫, 1988, 7-8쪽; 13쪽.
38) 오재환, <'五四'時期 以來 中國知識人의 宗教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2005, 116쪽. 1993년 11월 전국통전공작회의(全國統戰工作會議)에 참석한 강택민의 발언임.
39) <中共中央、國務院關於吉林省人民政府機構改革方案的通知>(中委〔2000〕137號)
40)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吉林省宗教事務局) (http://www.jl.gov.cn/zwxx/zfjg/zfzcbm/t20050720_7856.html); 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 <關於地方宗教工作機構有關問題的通知>(中央編辦〔2004〕5號). 2004년 이후의 인원 편제는 主任(局長) 1명, 副主任(副局長) 3명, 正副處長 16명 등 40명 정도이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다. 또한 성민위도 길림성의 5대 종교 협회, 민정청(民政廳), 공산당위원회 소속인 통전부 등과 연계되어 있고, 5대종교 협회장들도 정협 위원을 겸직한다. 가령 장춘시의 경우, 시 민위 주임・국장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활동한다.[41]

성 정부의 종무행정 구조는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이하 주정부)와 6개 시 정부에도 거의 적용된다. 주정부에는 민위(주정부종교사무국), 장춘・길림・사평・요원・통화・백산・송원・백성시의 시정부에는 민위・종교사무국이 있다. 다만 부서의 규모와 명칭은 각 지역별로 다르다. 장춘시는 종교1처・2처, 길림시는 종교사무1처(천주교・기독교)・2처(불교・이슬람교・도교), 사평・요원・백성시는 종교과(宗教科), 백산시는 종교사무과(宗教事務科), 주정부는 종교사무처(宗教事務處)이다.[42]

주정부의 사례를 보면, 민위는 종합처, 정법문교선전처(政法文教宣傳處/民族經濟處), 종교사무처로 구성되며, 주임・국장 1명, 부주임・부국장 2명, 정(正)・부(副)처장 4명 이외에 11명 정도의 규모이다. 종교사무처의 주요 업무는 종교 신앙 자유정책, 법적 종교사무 관리, 유관부서와의 종교정책과 법규 홍보, 종교계 인사 교육, 종교 방면의 정보 조사와 연구, 종교 활동과 장소관리 문제 등이다.[43] 이는 6개 시정부의 종교 부서 업무와 유사하다.

주정부와 6개 시정부의 소속 현이나 현급 시에도 종교사무부서가 있다. 가령 주정부 소속인 연길・화룡・훈춘・도문・돈화・용정시와 안도현・왕청현

41) 振興東北網(http://chinaneast.xinhuanet.com/2008-01/07/content_12139895.htm)(2008年1月3日長春市第十三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一次會議通過)
42) 長春市民族事務委員會(http://www.ccmw.gov.cn); 吉林市民族宗教網(www.jlsmzzj.gov.cn); 四平市人民政府(www.siping.gov.cn); 遼源市人民政府(www.liaoyuan.gov.cn); 通化市人民政府(www.tonghua.gov.cn); 松原市人民政府(www.jlsy.gov.cn); 白城市人民政府(www.bc.jl.gov.cn); 白山市人民政府(www.cbs.gov.cn);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www.yanbian.gov.cn/); 琿春市民族宗教局(www.hunchun.gov.cn/hcmzj/show.asp?ID=221)
43)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http://www.yanbian.gov.cn/)의 州政府組成部門.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州政府宗教事務局) 職能配置內設機構和人員編制方案(2001年9月). <中共吉林省委、吉林省人民政府關於延邊朝鮮族自治州機構改革方案的通知>(吉委〔2001〕35號)에 근거하여 주정부 민위가 설치되었다.

www.kci.go.kr

등의 지방정부에는 민족종교국(民族宗教局, 이하 민종국)이 있다.[44] 현급 시인 훈춘시 사례를 보면, 민종국 종교과의 주요 업무는 종교 신앙 자유정책 실시와 법적 종교사무 관리, 당의 종교정책과 법규 홍보, 종교계인사 교육, 종교 관련 정보 파악,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등이다.[45] 다만 진・향급 행정구역에 종무행정 업무가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종무행정 부서는 없다.

성 정부의 종교 정책과 종무행정 구조가 중앙인민정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는 <종교 사무조례>의 연관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 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 활동장소 설립은 현급 인민정부, 시급 인민정부,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와 연계된다(제13조). 성・자치구・직할시급 인민정부의 인준을 받은 대형 종교 활동도 해당 지역의 향・진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관리한다(제22조).[46] 또한 성 정부와 하위 지역의 민위(民委) 또는 종교사무부서도 수직적 관계이며, <길림성 종교 사무조례>에 따라 상호 연계된다.[47]

3. 길림성의 종교 현황

길림성 내의 공식적 종교 활동은 1981년 8월 이후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가 애국조직을 설립・회복하고

44) 延邊州語文工作委員會(翻譯局)(http://www.ybfyj.gov.cn/user/index.php?menu_id=32)의 專題信息 참조.

45) 琿春市民族宗教局(http://www.hunchun.gov.cn/hcmzj/show.asp?ID=221). 한편, 규모가 작은 향・진에는 민정과(民政課)에서 종교 사무를 담당한다.

4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426號 <宗教事務條例>(已經2004年7月7日國務院第57次常務會議通過, 現予公布, 自2005年3月1日起施行).

47) 吉林省民族宗教網(http://mw.jl.gov.cn/zwgk/bszn/200512/t20051225_107656.htm). 길림성 내 민위에는 省民委(宗教局, 長春市 新發路329號), 長春市民委(人民大街1811號), 吉林市民委(松江路65號), 四平市民委(政新街1號), 遼源市民委(人民大街217號), 通化市民委(秀泉路50號), 白山市民委(渾江大街152號), 松原市民委(寧江區沿江東路339號), 白城市民委(文化東路1號), 延邊州民委(延吉市 河南街長白路393號) 등이 있다.

제반 <장정(章程)>과 <애국공약(愛國公約)>을 제정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09년 현재, 길림성에는 성급 종교단체로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 이하 성삼자회), 기독교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 교무위원회,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가 있다.[48] 물론 각 단체는 종교사무국과 연계되고, 각 단체장들은 인민대표회의 대표와 정협 위원을 겸직한다.

2009년 현재, 길림성의 종교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49] 첫째, 개신교 인구는 36만 명(총인구의 37%) 정도이며, 등록 장소는 1,300여 처이다. 교직인원은 목사 37명, 장로 45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이며, 의무 전도원[義工傳道員]은 1,300명 이상이다. 민 정부 또는 성민정청(省民政廳)의 비준을 거친 기독교단체는 성급 2개, 시급 13개, 현급 31개 등 46개이다.

1981년 8월에는 성삼자회 제1차 대표대회(41명 대표)가 <성삼자회 장정>, 당시 성립된 길림성기독교협회가 <길림성기독교협회 장정>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1982년에 연길시 기독교회를 기점으로 용정, 도문, 화룡, 왕청, 훈춘의 교회가 회복되었다. 1983년 7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기독교3자애국운동위원회'와 '연변 조선족 기독교협회'가 재건되고 '규약'과 '애국공약'이 채택되었다. 1984년 9월, 길림성기독교 제2차 대표회(51명 대표)에서는 <길림성 기독교 애국공약>, <종교 활동규정(關天維護正常宗教活動的規定)>, <성삼자회 장정>, <길림성 기독교협회 장정> 등이 통과되었다. 그에 따라 1985년을 전후로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신자와 신학생 수가 증가되었다.[50]

48) 2009년 3월 31일 오후 6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종교국 종교사무처 처장 면담 자료에 따르면, 연변 지역에 이슬람 성직자[阿訇]가 없기 때문에 산둥 성과 허베이 성 등의 다른 지역에서 아굉을 초빙하고, 정부는 5-6백 원 정도의 월급(阿訇)을 제공한다. 다른 종교 교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급을 제공하지 않지만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난방장치나 각종 대규모회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원칙적인 정교분리가 실질적인 정교분리 형태를 띠는 사례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49) 이하는 주로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吉林省宗教事務局 홈페이지(http://mw.jl.gov.cn/jlzj/)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50) 김룡민, <21세기 전반기 중국 조선족 종교전망>,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조선족 발

www.kci.go.kr

1993년 3월, 길림성기독교 제3차 대표회의(74명 대표)에서는 <길림성 기독교교회 관리제도>(시행)가 통과되고, 성삼자회의 명예주석(主席)과 길림성기독교협회의 명예회장과 길림성 기독교 양회의 주석 겸 회장이 선출되었다. 2002년 10월, 길림성기독교 제4차 대표회의(95명 대표)에서는 기독교 양회의 상위회공작보고(常委會工作報告)와 함께 양회 장정이 통과되고, 양회 명예주석 겸 회장, 성삼자회 주석과 길림성기독교협회 회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2009년 현재 성급 기독교 단체인 삼자회와 기독교협회의 소재지는 장춘시 기독교당이다. 길림성의 하위 지방인민정부에도 양회의 하위 단체들이 존재한다. 현재 장춘시의 기독교 양회는 장춘시 기독교당, 길림시 기독교 양회는 길림시 기독교당, 사평시 삼자회는 사평시 기독교당, 요원시 기독교 양회는 요원시 기독교당, 통화시 기독교 양회는 통화시 기독교당, 백산시 기독교 양회는 백산시 기독교당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둘째, 2009년 현재, 천주교인은 약 8만 명으로 '길림교구' 소속이며 주로 농촌에 분포되어 있다. 공소(公所)를 포함한 등록 천주교당은 73처이며, 교직인원은 주교 1명, 신부〔神甫〕 54명, 수사 4명, 수녀 67명을 포함한 126명이다. 주교는 성정협상위(省政協常委)를 겸직한다. 길림성 내 천주교 단체는 성급 2개(吉林省主教愛國會, 吉林省天主教教務委員會), 시급 11개, 현급 12개 등 25개이다.

1980년부터 성 정부의 하위 행정 구역에서도 천주교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1980년부터 팔도구, 용정, 연길, 도문, 훈춘, 안도 등지의 교회가 회복되었고, 1984년 8월 '연변 천주교 애국회'와 '연변 천주교 교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6년부터 천주교는 각 지역에서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경전과 각종 종교서적을 출판하면서 교당을 신설하였고, 길림시의 천주교길림신철학원(天主教吉林神哲學院)과 수녀원에서 학습 생이 육성되었다. 또한 해외 국가들과의 왕래를 통해 외자 유치 형식으로 학교, 유치원, 병원 등도 건립되었다.[51]

전방략연구≫(요녕민족출판사, 1997), 982-983쪽.
51) 김룡민, 위의 글, 1997, 987-988쪽.

성급 천주교 양회와 장춘시 천주교 양회는 장춘시천주교당, 길림시 천주교 양회는 길림시천주교당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성급 양회는 길림시의 천주교 길림신철학원・수녀양로원(修女養老院)과 성가회수녀원(聖家會修女院), 연길시의 서광지가(曙光之家), 매하구시(梅河口市)의 본독회수녀원(本篤會修女院) 등을 운영한다.[52] 최근 천주교신철학원 등의 교육생〔修生〕은 약 30명(남 26)이며, 요녕성의 심양신학원 출신 길림교구 신부들은 10명 정도이다.[53]

셋째, 불교인은 45만여 명으로 대다수 정토종(淨土宗) 소속이며 소수가 천태종, 선종, 조동종 등에 소속된다. 다만 각 종파의 특징은 명확하지 않다. 등록된 활동장소는 약 110여 곳으로, 사원이 105개〔座〕(비구 469)이며, 승려〔僧人〕가 1,253명(비구 311)이다. 연령별로는 17-18세가 18명, 19-21세가 100명, 22-60세가 975명, 61세 이상이 160명이며, 그 가운데 문맹자가 26명, 소학(小學)이 301명, 초중(初中)이 570명, 고중(高中〔中專〕)이 244명, 불학원(佛學院)이 112명이다.

길림성불교협회는 1981년에 성립되어 1984년 제2차 대표회의, 1996년 제3차 대표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현재 회장은 길림성불교협회가 소재한 장춘시 반야사(般若寺) 소속이다. 반야사는 길림성 내의 최대 불교 총림(叢林)이자 불교 활동의 중심 사찰로 장춘시 불교협회의 소재지도 이곳에 있다. 길림성 전체에는 불교협회 9개가 있으며 성급이 1개, 시급이 5개, 현급이 3개이다. 다만, 불교신자의 수에 비해 조선족 승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54] 다만 2009년 3월 현재까지 조선어로 법회가 이루어지는 사찰은 연길, 용정, 도문, 단동, 훈춘 등 5곳이며, 연길의 경우 천도제와 사십구 제 등이 진행되고 일요법회는 없는 상황이다.[55]

넷째, 무슬림은 138,000명 이상이고, 청진사(淸眞寺)는 약 90곳이다. 1981년에 이슬람교협회가 성립되었고, 1984년, 1988년, 2000년에 각각 2,3,4차

52) 中國天主教網站(http://www.ccccn.org) 길림교구 교당 검색.
53) 信德網(http://www.chinacatholic.org).
54) 김룡민, 앞의 글, 1997, 997-998쪽.
55) 2009년 3월 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불교협회 부회장 면담 자료.

www.kci.go.kr

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 성 이슬람교협회는 장춘시 청진사(長通路)에 소재하며, 현재 제4차 회장이 楊淸庭 阿訇이다. 다섯째, 6C 말에 길림성에 전래된 도교는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통화시 도교협회(通化市道教協會)와 요원시 도교협회(遼源市道教協會)를 마련하면서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이 단체들의 소재지는 각각 통화시 옥황각(玉皇閣)과 요원시 복수궁(福壽宮)에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길림성의 종교 인구는 대략 불교인 45만 명, 도교인 9천 명, 무슬림 13만 명, 천주교인 7만 명, 기독교인 39만 명을 포함하여 107만 명으로, 총인구의 4% 정도이다. 등록 종교 활동 장소는 사묘(寺廟) 110처, 궁관(宮觀) 17처, 청진사 89처, 천주교당 73처, 기독교당 1,513처를 포함하여 1,802곳이다. 각종 교직인원(教職人員)은 승려 1,292명, 건곤도사(乾坤道士) 71명, 이슬람교 교사[阿訇, āhōng]·도사부(刀師傅)·해리범(海裏凡) 208명, 신부·수녀·수사 156명, 목사·장로·교사(教士) 212명 등 약 1,939명이다. 각종 종교단체의 수는 97개로 성급 6개, 시급 35개, 현급 56개이다.

<표3> 길림성 종교 현황(2004년 이후)

	신자수(만)	교직자	정식 등록 및 주요 종교 활동 장소	종교단체
불교	45만	승려 1,292	사묘 110처: 장춘般若寺, 길림北山廟群(關帝廟/玉皇閣/藥王廟/坎離宮), 요원彌陀寺, 돈화正覺寺 등	9개(성1/시5/현3)
기독교	39만	목사·장로·교사 212	기독교당 1,513처: 長春東三馬路基督教堂, 長春二道·길림·사평·요원·백성·통화·백산·돈화 기독교당 등	46개(성2/시13/현31) *의무 전도원 1,300
천주교	8만	신부·수녀·수사 156	천주교당(公所) 73처: 장춘시·길림시천주교당 등 *천주교당 검색 (http://www.ccccn.org/map)	25개(성2/시11/현12)
도교	0.9만	건곤도사 71	궁관 17곳: 통화시 玉皇閣, 요원시 福壽宮 등	*미확인
이슬람교	13.8만	阿訇·刀師傅·海裏凡 208	청진사 90처: 장춘 22, 길림 17, 사평 9, 요원 3, 통화 11, 백산 7, 송원 6, 백성 4, 延邊州 11.	
계	107만	1,939명	1,802처	97개(성6/시35/현56)

길림성의 중국 종교 현황과 비교하여 길림성의 한국 종교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 종교와 공식적인 접촉을 거치지 않은 길림성 내의 선·포교 활동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특히 개신교는 비공식적으로 길림성 진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를 전후한 시기 이후 대략적인 중국 선교 현황과 그 추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한 1990-1991년 사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의 접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 목회자들의 접촉, 천주교 원주교구의 연변 방문, 그리고 각 종교별 수재의연금 전달 등이 이루어졌듯이, 한국 종교계의 길림성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점까지만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한국 종교계는 개혁개방 정책 이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중국 진출을 적극 시도하였고, 그 방식도 종교별로 상이한 모습이었다. 개신교계는 주로 각 교회별·각 교파별 비공식 선교 양상, 불교계는 협정을 통한 포교 양상을 보였다. 2004년의 조사 자료를 보면, 개신교 8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85명, 기독교한국침례회 75명, 기독교대한감리회 62명,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성내동) 41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38명, 기독교하나님의성회 30명,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1명, 한국기독교장로회 2명 등 444명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에 파견된 수에 비해 우세한 수치였다 교단 소속이 아닌 선교단체들이 파견한 평신도 선교사 수치까지 포함하면 개신교계의 중국 진출 수치는 높은 것이었다.[56]

2004년 당시 천주교의 중국 선교사 파견 수치는 3명(교포 사목)과 43명(원주민 선교)이었다. 이는 개신교의 경우보다 적지만 천주교 내에서 다른 국가에

5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해외 선교·포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4, 15-32쪽 (개신교).

www.kci.go.kr

비해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해외교포 사목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에 신자 1,700명(남 800), 공소 6곳, 한국인 사제 2명, 수녀 10명 등이었고, 세례교인 70명, 예비신자 60명이었다.[57]

2004년 당시까지 불교계는 포교사를 거의 파견하지 않았지만 북경 만월사라는 한인 사찰에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영남불교대학 청도분원, 광주 불광선원, 남경 관음사, 천진 불광사, 위해 호림정사 등의 한인 사찰이 개원하였다. 불교계는 포교사 파견보다 현지 상호 협정을 통해 사찰의 운영권 확보, 사찰 용도의 건물 임대, 재정 지원 등의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조계종의 항저우(杭州) 고려사 운영[58], 2006년 11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개원한 청도분원[59], 2008년 5월 조계종 산하 사찰들의 지원으로 연길 시에 건립된 수월정사(水月精舍) 등이 그에 해당된다.[60] 한편, 2007년에는 태고종의 영산재와 중국 범패교향합창단 '신주화악(新州和樂)'의 상호 시연 등 한중불교문화 교류협정도 이루어졌다.[61]

중국정부도 한·중 수교를 전후하여 한국 종교계와 중국 종교계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였다. 중국불교협회는 1992년 10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한강 연등제 초청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기독교협회는 1992년 8월에 일행 9명을 서울에 파견되었다. 천주교의 김대건신부와 이승훈의 동상 건립 가능성도 높아졌다.[62] 1993년 2월과 4월에는 각각 KNCC 회장단과 중국기독교협회(CCC) 회장(정광훈 주교)의 상호 방문이 있었고, 9월에는 두 단체가 중국

57)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위의 글, 2004, 62-68쪽(천주교). 선교 방식은 교포사목 이외에 언어연수, 영어교육, 컴퓨터 학원, 진료소, 유치원, 사회복지, 간호, 노인복지, 장애아동 교사, 위생원 등 간접 선교 방식이었다.

58) <한국불교 중국 교두보 고려사>, ≪서울신문≫, 2008.3.20.

59)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청도 분원 개원……중국 포교 첫 발>, ≪불교신문≫ 2280호, 2006.11.22.

60) <수월스님은 '그림자 없는 성자'>, ≪중앙일보≫, 2008.5.29; <중국 조선자치주에 '한국불교 법등' 밝혔다>, ≪불교신문≫ 2341호, 2008.6.4. 연길에서는 '신흥불당'이다. 당시 '한중불교우호증진행사'에서 주 종교국장은 연변에 4개의 사찰과 14개의 불당이 있고, 앞으로 4개의 사찰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61) <중국과 불교문화 교류협정 체결 - 26일 베이징 중국종교사무국서 영산재 신주화악 교환 공연 합의>, ≪한국불교≫, 2008.1.4.

62) <한·중 수교 계기 종교교류 확산>, ≪서울신문≫, 1992.8.30, 8면.

남경에서 제1차 한중교회협의회(주제: '한·중 교회의 연대와 선교협력')를 개최하였다.[63]

특히 1980년 초, 재미 한인교회들의 중국 선교사 파송 이후 한국 개신교계는 길림성의 조선족 선교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선교 방식은 친인척 등 연락망 활용, 해외교포 선교사와 조선족 교회의 만남 주선, 선교용 서신 발송, 선교비·성서·찬송가 지원 등이었다.[64] 그리고 점차 중국복음선교회·중국어문선교회·모퉁이돌선교회·한국오픈도어선교회·HOPE·한국대학생선교회·중국선교연구원·중국오지선교회·차이나미션·차이나미션파트너·중국대학선교회 등 중국선교 전문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동시에 각 교단별, 여의도순복음교회·온누리교회 등 각 교회별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내 조선족·한족 대상 신학원도 운영되고 있다.[65] 개신교 내부에서 선교의 중심을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의 길림성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63) <대만·홍콩 우회진출/지역별 전략 수립/화교·방한 한족 전도>, ≪국민일보≫, 1994.8.24, 22면. 한중수교 직전부터 대외교류를 준비하던 중국기독교는 1992년 2월 WCC에 복귀하였고, 동년 5월20-30일에 한국교단대표를 공식 초청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 5-16일 중국교회 대표가 한국교회를 공식 방문하였다.

64) 인병국,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에스라서원, 1997), 45-46쪽.

65) <한국교회 중국선교 90년>, ≪국민일보≫ 2002.6.4, 32면; <한중수교 10주년 /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국민일보≫ 2002.8.26. 32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중국복지후원회(http://china.love2u.net/). 중국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각 20명을 모집하여 1년 3학기 수업을 진행한다. 중국복지후원회의 중국선교사는 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 및 상담 1명, 경로원 부관장 1명 등이다. 한편, 중국복음선교회는 1994년에 '국제 중국 미니스트리'(CMI) 한국지부, 중국어문선교회는 홍콩복음증주협회(CCL)와 협력기관이 되었다. 다른 한편, 예장(통합) 소속의 동포사랑교회는 2008년 3월부터 중국인 대상으로 동북아 신학원을 운영한다(≪중국동포타운신문≫ 114호, 2007.11.5; 2008년 10월 13일 11시 면담).

www.kci.go.kr

4. 한국 종교의 길림성 진출 방식

한국 종교계가 활발하게 길림성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그 진출 방식은 어떠한가? 그에 대해 선교 열기가 높은 동시에, 길림성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신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개신교는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를 통한 공식 접촉, 가정교회(house church)[66]와 단기선교와 지하신학교 등을 통한 비공식 접촉, 양자의 혼합을 시도하며 방송선교, 문서선교, 연구사역, 지식인선교, 장애인선교, 도시빈민사역, 재한중국인선교, 제3국을 통한 선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67] 그 가운데 언론 보도에서 지적되는 방식들은 주로 공동체 사업, 의료·사회복지·교육시설의 건립 지원, 교회 건립 지원, 탈북자 지원, 단기선교와 '지하신학교' 지원 등이었다. 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린마을운동과 연변두레마을 등과 같은 공동체 사업 방식이다. 주로 기독교 인사가 참여한 세계선린회는 1992년 9월부터 화룡시 서성진 장항촌(獐項村)에서 소 50마리로 선린(善隣)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구촌을 향한 선한 이웃 운동'을 슬로건으로 현재 연길·용정·화룡·도문시 등 4개시의 12개 농촌에서 촌 선린회가 중심이 된 주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촌 선린회의 주요 사업은 목축, 양돈, 거위 기르기, 검정버섯, 잎담배 재배 등이며, 세계선린회는 사업자금의 융자와 회수, 그리고 유치원, 의료실, 도서실, 노인 휴게실, 집회실, 공부방, 각종 행사 장소 등으로 활용될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한다.[68]

66) Philip Wickeri, *The Chu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편역, ≪중국교회의 현실과 신학≫, 1988, 19-20쪽. 가정교회와 공식적 교회 등은 중국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분열은 홍콩 및 기타 지역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다.

67) <한국교회 중국선교 90년……"13억인 복음화 밀알로">, ≪국민일보≫ 2002.6.4, 32면.

68) 세계선린회(http://www.worldneighbours.net/business/business.php?sub=2&menu=1); <세계선린회,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10년째 3세계에 희망심어>, ≪국민일보≫ 2002.7.9, 30면.

한국의 기독교공동체인 두레마을은 1997년 5월, 23,000만원에 50년 동안 130만평을 빌려 연길시인민정부의 영업 허가서를 받고 연길시 의란진 연화촌에 '연변두레마을'을 건설하였다. 두레마을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북한과 조선족 지원, 장기적인 중국선교의 기지 건설, 중국·북한 동포와 한국인의 공동체 건설, 농장 경영 수익의 선교비 활용 등이다.[69] 실제로 당시 한국인 5명과 현지 일꾼 10명의 공동체가 슈퍼옥수수의 종자 생산과 시범옥수수단지, 양돈단지, 약초 특용작물생산기지, 농축산물 가공과 유통단지 등을 조성하였고, 선진농업기술과 경영방법의 중국·북한 보급, 청소년 훈련센터 건립, 민족과 복음, 노동과 기도를 통합하는 연변두레영성훈련원 설립 등을 계획하였다.[70]

연변두레마을은 점차 확장되어 2003년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이하 연변과기대) 소속인 한응수(목사)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명의 농촌공동체로 확대되었다. 북한에 대한 고아원 식량 및 의류 지원, 농장 지원 사업 및 묘목 보내기, 경운기 지원 사업 등도 진행되었다. 2004년에는 동북아 녹색경제대회를 기점으로 동북아지역 녹색운동의 거점 마련을 위해 연변두레마을을 '장백산 에코폴리스'로 조정하는 조짐이 보였고, 방문자도 연 4천여 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무엇보다 선교 사업이나 탈북자 돕기 운동을 하는 단체로만 여겨 경계하던 지방정부도 협조를 약속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71]

그렇지만 2005년 12월에 연변두레과학농목유한공사, 순창진미식품주식회사, 연변민들레생태산업연구유한공사 사이에 장류사업 합작 약정서가 체결되었으나, 2006년 2월 이후 2006년 2월에 두레측이 신임 사장을 보내면서 장류

69) <선교와 사업을 하나로 / 두레선교운동이 중국 복음화의 밑거름>, ≪두레신문≫ 42호, 2005.1.30.

70) <기독공동체 '연변 두레마을' 세운다>, ≪국민일보≫ 1997.9.18. 23면.

71) <연변서 생태농업 펼치는 '두레마을' / "된장·간장 담가 북에 보내요">, ≪한겨레≫ 2003.1.15, 28면; <간도 심장부 연길 '연화촌' 두레마을 공동체 현장>, ≪한겨레≫, 2004.8.30, 10면; <중국 옌볜 두레마을 "東北亞 '그린 르네상스' 꽃피울 것">, ≪문화일보≫, 2004.9.3, 9면; <'에코폴리스' 꿈꾸는 옌볜 두레마을>, ≪오마이뉴스≫, 2005.9.21, 2492면. 장백산 에코폴리스(Eco-polis)는 향후 20년 동안 '산(産, 녹색산업기지)-학(學, 교육기지)-주(住, 주거단지)-휴(休, 휴양단지)'가 일체화된 '생태 문명촌'을 건설하려는 두레마을 프로젝트이다.

www.kci.go.kr

공장 이용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토지분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12월에는 연화촌 연의회 촌민대표들이 연화촌과 지방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독교 전파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레측을 연길시인민정부에 고발하였다. 그 직후에는 민들레측이 장류공장의 자물쇠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자, 두레측이 민들레측을 공안당국에 무단침입으로 고발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72]

둘째, 의료・사회복지・교육 시설의 건립 지원 방식이다. 최근 한국 개신교계의 선교는 한중수교 초기의 조선족 선교 중심에서 탈피하는 추세이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도시빈민과 관련 빈민촌 사역 상황, 고아원과 양로원 등의 복지사역, 소수민족과 장애인 사역, 의료・문서선교 등의 상황 때문이다. 한인선교사의 거주지역도 대도시와 내륙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이며, 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등을 주축으로 캠퍼스 제자훈련도 활발하다.[73]

교육 시설 지원과 관련된 대표 사례가 연길시 북산가의 연변과기대이다. 연변과기대는 1988년 연길시정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김진경(목사)과 합의 이후 1989년에 총 약 3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의 소망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에 관련된 64명이 대학후원이사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성 정부 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각각 학교개설 비준을 받았다. 1993년 4월에는 대학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박 국회의원)가 결성되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려대총장, 흥사단공의회장, KIST이사장 등 17명으로 대학고문단이 구성되었다. 당시 이사장은 곽선희(소망교회 목사)였고, 일반 직원과 대학 교수의 절반은 한국인이었다.[74]

1994년 8월에는 (주)데이콤의 초청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 학생 20명이

72) 한-차이나(중국 한민족 공동체)(http://blog.daum.net/hanphill21/16512353)의 <연변 두레마을 토지분쟁 어디까지 가나>.
73) <한중수교 10주년/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국민일보≫ 2002.8.26. 32면.
74) <연변과기대 내달 개교/김진경 총장 앞장……기독교・학계 등 후원>, ≪국민일보≫ 1993.8.16, 10면; <지난달9일 개교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월요초대석)>, ≪한국일보≫ 1993.10.4, 6면.

연수 명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연수일정 중에 국민일보사의 초청을 받아 오찬을 나눈 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대성전과 부속실, 방송국 등을 견학했다.[75] 1996년 10월에는 창조과학을 목회학적 차원에서 주도해 왔던 목회자 등 약 1백 명이 창조신앙회복과 청년들의 교회 인도를 목적으로 2개월간 전국 순회 창조과학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강사진에 창조과학회 부회장이면서 연변과기대 부총장(원동연)도 포함되었다.[76] 1997년 7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는 4년제 본과생 119명을 비롯하여, 전문대과정 훈련원과정 등 모두 19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77] 재단 측은 연변과기대 학생들의 90%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한다.[78]

실제로 연변과기대는 선교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보이며, 주정부 종교사무처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에게 종교 활동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에서는 현재 연변과기대 내에 '임시종교 활동 장소', 즉 외부에 십자가를 걸 수 없지만 내부에 십자가를 걸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 이는 예배 때마다 연변과기대의 개신교인들이 외부의 연길교회에 가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종교 활동 장소 불인정이라는 원칙이 현실적으로 변형된 주요 사례이다.[79]

셋째, 교회 건립 지원 방식이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개신교계는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등과 공식 접촉하였다. 길림성의 경우에도 개신교계는 심양의 서탑(西塔)교회(1994년 헌당), 연변의 연길(延吉)교회(1997년 헌당) 등 조선족 삼자교회와 500여 곳의 처소교회 건축을 지원하였다.[80] 이러

75) <연변과기대생 '조국 연수'/동포학생 20명 '순복음' 등 견학>, ≪국민일보≫ 1994.8.15, 21면.
76) <17일부터 1백여 회원 전국순회 세미나・성회 개최>, ≪국민일보≫ 1996.10.9, 13면.
77) <연변 과기대 종헙생 백98명 첫 배출>, ≪동아일보≫ 1997.7.3, 30면.
78) <소망교회와 곽선희 목사의 對北지원 문제>, ≪브레이크뉴스≫, 2008.1.5.
79) 2009년 3월 31일 오후 6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종교국 종교사무처 처장 면담 자료. 2009년 현재, 연변(연길)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변과기대를 포함하여 2곳의 '한국인 임시종교 활동장소'가 있다.
80) <한중수교 10주년/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국민일보≫ 2002.8.26, 32면.

www.kci.go.kr

한 지원은 개별 교회 단위에서도 이루어졌다. 가령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광림교회는 1990년대에 연길교회, 도문교회, 심양 서탑지교회, 길림성 고점자교회 등의 건립을 지원하였다.[81] 이러한 지원은 1997년 8월 청운교회의 연변 천보산 교회의 건축 지원처럼 해외 교회나 선교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양의 서탑교회도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의 공동 지원을 받은 경우이다.[82]

한국 천주교도 중국 선교에 관심을 보였다.[83] 구체적으로 길림성 선교에 관심을 보인 교구는 수원교구였다. 수원교구는 1994년 7월에 길림교구와 자매결연을 하여 공식 교류를 시작하였고, 1996년에 길림교구 다조구에 성당 신축을 지원하였고,[84] 장춘의 소팔가자 천주당에 김대건 기념관과 성당입구 2Km정도를 포장하여 이른 바 '김대건 로'를 건립하였으며, 1987년 이후 길림교구의 사제와 성소자 교육을 담당하는 길림신학교와 자매결연을 하여 지원하고 있다.[85] 1999년에는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교회와 제구용품 나누기'운동을 전개하여 2000년에 길림교구와 요녕교구 등에 제구용품을 전달하였다.[86] 2008년 4월에는 중국선교후원회를 발족하고, 동년 5월에 길림교구의 장춘 한인 공동체와 요녕교구의 심양 및 대련 한인 공동체를 방문하여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길림소신학교와 심양대신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8년 중국방문을 계기로 동북삼성의 각 교구의 후원을 위해 중국선교위원회를 주축으로 직암 선교후원회에서 선교를, 중국성소후원회에서 성소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87]

81) 광림교회(http://www.klmc.net/d08-churchinfo/menu9.asp)
82) 청운교회(http://202.68.237.27/sub08/013.asp); <조선족 교인 2만여 명, 목사는 6명뿐>, ≪국민일보≫ 1993.7.24, 12면.
83) <글라렛 미션센터, 16일 '중국선교주제 사례 연구발표회>, ≪가톨릭신문≫, 2002.12.15; <서울 마천동본당 '중국선교·북한이탈주민' 위한 미사·기도회>, ≪가톨릭신문≫, 2004.5.30.
84) 수원교구 하남성정하상바오로성당(http://cahanam.casuwon.or.kr/board/cover_list.asp)의 '커버스토리'
85) 쌍투스투어(http://www.sanctustour.com/gallery/read.php?np=5&pid=45530&uid=259931)
86) 수원상촌성당(http://www.inews.org/Snews/Board/show.php?Domain=sangchon&SeqCode=8&No=1609)

넷째, 탈북자 지원 방식이다. 한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길림성은 중국과 북한과 한국을 잇는 전략적인 선교의 거점이다. 이 때문에 두리하나선교회, 납북·피랍인권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한국기독교 귀순동포정착지원협의회,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등은 공개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기도 한다.[88] 한국 개신교계와 가톨릭이 동북 삼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선교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탈북자들을 훈련시켜 선교를 위해 북한에 다시 돌려보낼 준비를 한다.[89] 그와 관련하여 개신교 단체에서는 탈북자와 북한 왕래가 가능한 조선족을 북한선교의 대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90]

다섯째, 단기선교와 '지하신학교' 지원 방식이다. 한국 개신교계에서 해외선교 단기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 직후인 1989년 이후였다.[91] 1992년 한국외항선교회의 실적보고처럼 당시까지 78개 국가에 총 256명의 장기선교사 이외에 340명의 단기선교사가 파송되었을 정도였다.[92] 현재는 단기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 신자들의 단기선교여행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용인하지 않는 가정교회를 방문하거나 농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방식이다. 한편, 중국 내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신학원이 확장되고 있고, 동북 삼성 기독교협회도 심양의 동북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93]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심양의 창춘과 연길 등

87) <수원교구, 중국선교위원회 발족>, ≪가톨릭신문≫, 2008.4.20; ≪수원교구 인터넷신문≫ 2008.5.8.
88) <中서 활동 탈북자지원단체>, ≪한국일보≫ 2004.6.8; 북한이탈주민후원회(http://www.dongposarang.or.kr/)
89) 한국인터넷신학대학(http://theology.ac.kr/start.htm)
90) 김연중, <북한선교활동의 분석과 정책 제안>, ≪북한연구 학회보≫ 6-1, 북한연구학회, 2002, 313-315쪽.
91) <여호수아 프로그램/타깃 2000/단기선교 "대표적 모델">, ≪국민일보≫, 1993.4.24.
92) <외항선원 복음화 앞장/19년간 2만5천여 명 결신/외항선교회 정총>, ≪국민일보≫, 1993.1.26.
93) CCL 엮음,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 협력기구(HOPE), 1990, 158-159쪽; 장지강, <중국학계의 기독교연구>, ≪신학과 세계≫ 통권 50호, 감리교신학대학, 2004년 여름, 278쪽.

www.kci.go.kr

에 비인가 신학교(소위 지하신학교)가 설립되거나 운영되기도 한다.[94] 길림성에도 상당수의 지하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95] <단기선교 일정>에도 '지하신학교'의 방문이나 강의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다.[96]

그 외, 최근에 불교방송이 중국 측의 협조와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사용 허가를 얻어 중국 내 한국인과 연변 지역의 조선족 등을 주 청취 대상으로 국내에 중파(AM)방송을 위한 송신소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개신교계는 이미 1956년 경기도 시흥에 설립된 극동방송, 1973년 제주도에 설립된 아세아방송을 통해 중국 연변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상황이다.[97]

주목할 부분은 해외 선교·포교가 상호 만남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변화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선교·포교 활동은 선·포교사의 타협적 적응주의와 지역민의 호의적 수용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98] 인지주의 방식에 따른다면 선·포교사와 지역주민의 태도 유형은 비타협적 동화와 타협적 적응으로, 다시 비타협적 동화는 거부와 무관심, 타협적 적응은 호의적 적응과 비호의적 적응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타협적 적응은 낯선 대상(상황)의 변화를 의도하기보다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 유형이다. 선·포교사와 지역민의 태도 유형이 타협적 적응이라면 양자의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선·포교사가 외적으로 타협적 적응 유형을 취하면서 내적으로 비타협적 동화 유형을 지향한다면 양자의 갈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협적·호의적 적응 유형'을 취하되 선·포교가 최소한 두

94) <한중수교 10주년/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국민일보≫ 2002.8.26, 32면; <중국에서 지하 신학대를 운영 중인 최은혜 선교사>, ≪크리스천투데이≫, 2006.4.7; 예장 계신측 인창반석교회(http://icbansuk.org/)의 중국선교보고; 미주서부장로교회(http://www.wpca.org/)의 중국 예군대 선교소식.

95) 하나선교회(http://www.hanamission.net/)

96) 열방교회(기독교미주성결교회)(http://www.anchurch.com/main/zboard.php?id=notice&no=58);

97) 혜원선원(http://hwon.net/sachal/board/skboard_view.php?id=board02&no=97); <한국교회 중국선교 90년……"13억인 복음화 밀알로">, ≪국민일보≫ 2002.6.4. 32면. 극동방송은 저녁 7-9시까지 중국어방송으로 중국 선교를 진행하였고, 아세아방송은 중국 선교 전문방송인 KSBU의 후신 성격을 지닌다.

98) <해외 선교·포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5-6쪽.

문화의 만남임을 감안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 분위기나 관련 정책을 감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 정부가 외국 정부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선·포교사의 '타협적·호의적 적응 유형'이다. 2004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기독교 교류회에서 국가종교사무국과 삼자회의 인사가 요구한 내용이 이를 시사한다. 당시 중국 측이 지적한 것은 중국이 시장 경제로 변화하면 민주화와 법제화 과정에 있다는 점, 호함파·영영교·부름 받은 왕·제자회·중생파·동방번개파 등의 이단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 중국 교회가 사회주의적 지상낙원의 실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봉사를 강조한다는 점, 한국 개신교가 공식루트(양회)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학습반을 조직하거나 종파를 만들거나 특정 지역을 선교구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주 안에서의 정당한 교통이 아니며 중국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이었다.[99]

그렇지만 한국 개신교계의 길림성 선교에는 타협적 적응보다 비타협적 동화 유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교 방식 가운데 세 번째는 '삼자교회'(등록교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성 정부와 갈등을 빚는 '불법 행위'로서 경계 대상이 된다. 중국은 '불법선교' 행위에 대해 퇴폐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혐의를 적용한다.[100] '불법행위'는 2008년 사이버 경찰청 외사정보과의 '중국 공안(경찰), 불법선교 혐의 한국인 조사'라는 공지사항에서 짐작되듯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101] 개신교의 길림성 선교와 관련하여 보도된 몇몇 사례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02]

99) <한중기독교 교류회를 통해 본 중국교회 현황>, ≪기독신문≫, 2004.10.25; <"한중 기독교 신뢰 위해 왔다" 세계선교협의회, 제2차 한·중기독교교류회 개최>, ≪오마이뉴스≫ 2004.10.19.

100) <中 공안, 현지 사역중인 미국·중국인 목사 체포, 가정교회 예배 직후 체포…… '퇴폐적 사회행위' 혐의 적용>, ≪기독일보≫, 2007.5.4.

101) 사이버경찰청 외사국 공지사항(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당시 내용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가 불법선교활동 및 각종 사회 안정 불안요인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102) <한인 목사 등 길림성서 구금/10여명 이틀 동안>, ≪동아일보≫ 1995.8.8, 31면;

www.kci.go.kr

- 1995년, 단기여행 도중 길에서 성서를 나눠준 한국인 목사와 일행들의 구금 사건
- 1999년 4월(장춘), 정식 종교 활동 허가장소가 아닌 이유로 한인 유학생 교회가 해체된 사건
- 1995년 7월(길림), 조선족의 예배 참가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00목사가 체포된 사건
- 1995년 8월(서란현), 00목사 등 17명이 선교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을 지불한 사건
- 1995년 9월(연길), 예배중인 선교사를 연행하고 신자들에게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내린 사건
- 1996년 12월(심양), 불법 교육과 외국 종교 선전물 살포 혐의로 2명의 선교사를 체포한 사건
- 2001년 12월, 탈북자 탈출과 관련하여 검거된 00전도사 사건
- 2002년 4월(연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00목사가 공안국에 체포된 사건,
- 2002년 5월(연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작은 천사의 집' 운영자인 선교사 등을 체포한 사건

개신교계의 중국 선교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중국 이미지이다. 주된 이미지는 '공안을 앞세워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라는 이미지이다. 그렇지만 주 종교국 인사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도 증가되는 종교시설과 종교인의 수에 비해 종교 관련 담당 공안과 종무행정 부서의 담당 인원이 부족하여 대형 사건이나 종교 내부의 분열 문제로 인한 신고가 없다면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선교비 지원을 위해 가령 '지하교회'나 '지하신학교' 등을 통해 부정적인 중국 이미지를 조작하여 한국에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03]

<중국선교 달라져야 한다/성경배부 한국인목사 구금사건 계기 비판여론>, ≪국민일보≫ 1995.8.10, 14면; <중국 장춘 공안당국의 선교 탄압>, ≪불교포커스≫, 1999.7.27; 기독교 국제 선교협회(http://imc7.net/zb4/view.php?id=government&no=2); <中공안 탈북자 대대적 색출>, ≪문화일보≫ 2001.7.31, 28면; <탈북자 돕던 목사·전도사 등 3명 中체포 수개월째 억류>, ≪SWIM선교뉴스≫, 2002.4.26; <탈북지원 선교사·탈북자 中공안에 억류>, ≪크리스천투데이≫, 2002.5.20. 이외에도 '중국 구금 탈북자 지원 활동가 석방을 위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중국에서 탈북동포들의 한국행 등을 주선하다 공안에 체포돼 구금중인 활동가는 개신교인 15명이었다(<"강제 북송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최금철 선교사 '난민청원서' 및 편지 공개>, ≪국민일보≫ 2004.7.12).

두 번째 이미지는 '삼자교회'(등록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등록교회를 개신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등장한다. 나아가 현재는 등록교회와 미등록교회를 포괄하여 '이단'이 많다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어느 중국선교사에 따르면 연길시의 경우 2만여 명의 조선족 기독교인 가운데 5천 명 이상이 이단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조선족 교회인 연길교회에서 2009년 3월부터 40주에 걸쳐 전교인을 상대로 이단대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104] 필자는 실제로 연길교회에서 소속 신자들에게 제공한 '한국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1915-2008년까지)'라는 문서를 확보하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작성하여 연길교회에 제공한 약 75개의 이단 명단이 기록되었다. 동시에 필자는 연길교회 관리자에게 현재 특히 A교단과 B교단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105] 양국 개신교가 '이단·사이비' 문제를 공식적인 상호 교류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가종교사무국, 길림성의 성 민위, 성 정부 소속 지방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들은 종교에 대해 종교오성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법 앞의 평등과 차별 대우 금지, 법과 규정 내의 종교 활동, 삼자원칙 등에 대한 준수를 강조한다. 다만 공인 종교 정책이 시행되고 이단 담론이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보장, 법 앞의 평등과 차별 대우 금지 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 장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상황도 정교분리 원칙의 제한된 적용을 시사한다. 이 점들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강조점은 결국 '법과 규정 내의 종교 활동'에

103) 2009년 3월 31일 오후 6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종교국 종무처 처장 면담 자료.
104) <이단의 숲, 중국>, ≪현대종교≫ 412호, 2009, 24쪽.
105) 2009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연변 연길교회 관리자 면담 자료.

www.kci.go.kr

있다.[106]

한국 종교계의 길림성 진출, 즉 외국인의 중국 선교와 관련하여 종교사무부서들은 '법과 규정 내의 종교 활동'과 함께 삼자원칙에 대한 준수를 강조한다. 외국세력의 간섭과 통제 없이 중국인 스스로 종교 사무 처리하고, 종교단체가 독립・자주・자영(自辦)의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 교회나 사찰 등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교역자를 양성하며, 선・포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인으로서 종교인'을 허용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중국인'을 불허하는, 가령 양자의 선택 상황에서 종교보다 중국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국인을 지향하는 정부의 태도로 보인다.[107]

성 정부는 개신교 내부의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 또는 '미등록교회'와 신자들의 존재, 이들과 외국 선교단체 사이의 비공식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기독교에 주목한다. 최근 조선족 선교에서 한족 선교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처럼 그 동안 한국 개신교계는 조선족 선교를 '민족 복음화'뿐만 중국과 북한 선교의 거점 확보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1979년 1월 중・미 수교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 선교사들이 동북삼성의 가정교회와 비공식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개신교계도 동북삼성의 조선족 선교에 치중한 감이 있다.[108] 다만 한국 개신교계는 성 정부가 종교 관련 협회나 종무행정 부서를 통한 공식적인 접촉, 그리고 타협적・호의적 적응 유형을 요구하는 맥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길림성에서 한국 개신교와 연관된 교회는 이단・사이비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중국기독교협회의 성서관, 그리스도관, 구원관, 종말론, 교회관, 삼자원칙 준수뿐만 아니라 권선징악 체제라면 언제든지 존중하고 국가의 법규에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적 행동에 일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106) 류성민, <중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연구>, ≪종교연구≫ 48, 한국종교학회, 2007, 71쪽.
107) 강돈구, <동아시아의 종교와 민족주의>, ≪종교연구≫ 22, 한국종교학회, 2001, 33쪽. 강돈구는 '종교인이면서 한국인'보다 '한국인이면서 종교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08) 인병국,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에스라서원, 1997), 7-15쪽; 43-4쪽; 57-58쪽.(동서선교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미간행자료인 ≪중국 한인교회 실태 보고서≫를 참조한 것임)

'이단・사이비'의 기준을 시사한다.[109] 이러한 기준은 교단별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연변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인식하는 한국 개신교계의 '이단・사이비' 기준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사이비' 문제는 양자의 교류 통로가 되고 있다.[110]

길림성기독교협회가 성 정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성 정부도 '이단・사이비'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 정부는 '법과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기독교계를 주목할 뿐이다. 다만 중국이 하나의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를 한국의 개신교처럼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별도의 강력한 대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 정부의 종무행정 부서가 한국 개신교계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111] 이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한국 개신교계는 자체적으로 규정한 '이단・사이비' 기준과 내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 종교계는 해외 선・포교가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변화 가능성이 포함된 문화적인 만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의 일방적인 변화를 의도하기보다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할 때 적절한 선교 방식과 태도가 수반될 것이다. 또한 한국 종교계는 해외 선・포교가 해당 국가의 정책 및 행정과 만나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해외 선・포교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의 최소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양국 개신교계의 교류 통로인 '이단・사이비' 문제도 그 규정의 기준과 범위가 역사적으로 상황별・지역별에 따라 다르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 규정 기준과 범위의 자의성, 양국의 규정 기준과 범위의 상이성 등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한국 개신교는 중국의 '이단・사이비' 담론의 확산에 무분별하게 동참하게 되고, 동시에 그 부메랑 효과를 경

109) China Christian Council, "One Hundred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hristian Faith", in *Chinese Theological Review*(1985), 211-242쪽; <기독교신앙에 관한 일백문답>, 중국기독교협의회, 1983, 48쪽; 55-56쪽; 61쪽; 62-4쪽; 70쪽.
110) My Love China(http://cafe.daum.net/MyLoveChina/36dD/36);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국민일보≫ 2009.1.21, 32면.
111) 2009년 3월 31일 오후 6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종교국 종무처 처장 면담 자료.

www.kci.go.kr

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신문류: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불교신문≫, ≪중앙일보≫, ≪한국불교≫, ≪중국동포타운신문≫, ≪두레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가톨릭신문≫, ≪수원교구 인터넷신문≫, ≪크리스천투데이≫ 등.

중국 측 홈페이지: 法律圖書館; 吉林省民族宗教網, 中國佛教信息網, 中國道教協會網, 中國伊斯蘭教協會, 中國基督教網站, 中國天主教網站,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網,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設全國委員會, 統一戰線工作部, 國家民族事務委員會,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吉林省宗教事務局), 振興東北網, 長春市民族事務委員會, 吉林市民族宗教網, 四平市人民政府, 遼源市人民政府, 通化市人民政府, 松原市人民政府, 白城市人民政府, 白山市人民政府,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 珲春市民族宗教局,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 延邊州語文工作委員會(翻譯局), 珲春市民族宗教局, 吉林省民族宗教網, 吉林省民族事務委員會・吉林省宗教事務局, 中國天主教網站, 信德網

한국 측 홈페이지: 주선양총영사관, 외교통상부, 세계선린회, 한-차이나(중국 한민족 공동체), 수원교구 하남성정하상바오로 성당, 쌍투스투어, 개신교 및 불교계 홈페이지.

중국 측 문건: <中華民國憲法>; ≪길림연감2003≫. <2003年吉林省人口主要數據(data)統計表>; <吉林省宗教事務條例>(吉林省第八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公告, 第95號); <延邊朝鮮族自治州自治條例>(1985年4月24日 通過. 1985年7月31日 批准); <長白朝鮮族自治縣自治條例>(1991年3月23日 通過. 1991年5月9日 批准. 1991年6月15日 發布施行); <伊通滿族自治縣自治條例>(1992年6月9日 通過. 1992年7月13日 批准); 國務院批轉宗教事務局、國家建委等單位<關於落實宗教團體房産政策等問題的報告>(1980.7.16);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1982.3.31); 江澤民, <保持黨的宗教政策的穩定性和連續性>(1991.1.30); <中共中央、國務院關於吉林省人民政府機構改革方案的通知>(中委〔2000〕137號); 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 <關於地方宗教工作機構有關問題的通知>(中央編辦〔2004〕5號); <中共吉林省委、吉林省人民政府關於延邊朝鮮族自治州機構改革方案的通知>(吉委〔2001〕35號);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426號, <宗教事務條例>(2004年7月7日 通過, 2005年3月1日 施行); <기독교신앙에 관한 일백문답>, 중국기독교협의회, 1983.

CCL 엮음,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 협력기구(HOPE), 1990.

China Christian Council, "One Hundred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hristian Faith", in *Chinese Theological Review*(1985).

Philip Wickeri, *The Chu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편역, ≪중국교회의 현실과 신학≫, 1988.

강돈구, <동아시아의 종교와 민족주의>, ≪종교연구≫ 22, 한국종교학회, 2001, 33쪽.

강준영, <중국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중국종교의 부활>, ≪중국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2002.

_____, <중국의 종교통제와 사회 안정>, ≪중국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2004.

김룡민, <21세기 전반기 중국 조선족 종교전망>,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조선족 발전방략연구≫, 요녕민족출판사, 1997.

김연중, <북한선교활동의 분석과 정책 제안>, ≪북한연구학회보≫ 6-1, 북한연구학회, 2002.

김영환, <중국의 종교정책과 북방선교>, ≪누리와 말씀≫ 4,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류성민, <중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연구>, ≪종교연구≫ 48, 한국종교학회, 2007.

_____, <한, 중, 일 삼국의 종교정책 비교>, ≪종교연구≫ 46, 한국종교학회, 2007.

박만준,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에서 본 대(對)기독교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망 - 제7차 중국기독교 전국대표회의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6-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4.

_____,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소연구>, ≪중소연구≫ 29-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

오재환, <'五四'時期 以來 中國知識人의 宗教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2005, 116쪽. 1993년 11월 전국통전공작회의(全國統戰工作會議)에 참석한 강택민의 발언임.

_____, <개방 20년 기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중국학보≫ 48, 한국중국학회, 2003.

www.kci.go.kr

왕순홍 저, 정차근 역, ≪중국의 어제와 오늘≫, 평민사, 2003.
_____, <중국의 종교정책과 북방선교의 현실>, ≪누리와 말씀≫ 4,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_____, <최근 중국 공산당의 종교 사업에 대한 중시와 태도(1988-1993)>, ≪신학논단≫ 22,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94.
유서상, <최근 중국의 종교정책>, ≪신학논총≫ 3,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7.
윤창운, ≪사회주의국가의 개방과 개혁에 미친 인적 교류의 영향과 파급효과>, ≪북한학보≫ 21, 북한학회, 1997.
이은자, <비밀결사의 유산과 현대중국 - 법륜공의 역사적 기원>, ≪중국학보≫ 47, 한국중국학회, 2003.
인병국,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 에스라서원, 1997.
장지강, <중국학계의 기독교연구>, ≪신학과 세계≫ 통권 50호, 감리교신학대학, 2004.
전성홍, <중국의 개혁과 종교 - 국가의 종교정책, 민간의 종교 활동, 지방의 종교통제>, ≪동아연구≫ 3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5.
조재송, <胡錦濤 체제의 신종교정책 析評 - <종교 사무조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34, 중국학연구회, 2005.
차차석,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 ≪한국불교학≫ 47, 한국불교학회, 2007.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해외 선교·포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4, 15-32쪽(개신교).
허 원, <사회주의 중국의 현대화와 기독교 인식>, ≪인문과학연구≫ 2,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_____, <최근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종교인식 변화>, ≪동아시아역사연구≫ 1,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6.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hina mission of Korean religions after China's Reform and Open Policy. We can carry out research on this subject because Jilin province is area where Koreans and Chinese of Korean descent is densely populated. Korea religions show interest relating

mission, and the most Korean prisoners is now in jail.

To achieve these purposes, in chapter 2, in the title of 'religious policy and religious affairs in Jilin province' I analyzed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us polic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olicy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Jilin province, including religious affairs. And pointed out kernels of religious policy and affairs in Jilin province.

In chapter 3, 'present condition of religions in Jilin province', I suggested the present condition of China' and Korea' religions in Jilin province. This statistics indicate that religious believers were on the increase.

And, in chapter 4, I analyzed missionary ways of Korea's religions through missionary cases of Protestantism. And, through these, I suggested standpoints of Jilin province for China mission of Korea's religions, and emphasized that Korea's religions should have endless change for overseas mission, It is no change for the sake of change. I hope many researchers have interest in overseas mission of Korea's religions, with this articles as a momentum.

Key words: China's Reform and Open Policy, the Normaliz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2, Jilin Province, Religious Policy, Religious Affairs, Korean Religions, Overseas Mission, Endless Chang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2.28	2009.3.20	2009.4.3	2009.4.10	2009.4.30

www.kci.go.kr